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03
----------	------

제출일자: 2015. 9. 30.

제 출 자: 광진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통봉사단체 지원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교통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교통봉사단체의 임무 및 경비지원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예산지원 중단 및 사용액 반환의 사유 등 규정(안 제4조)
- 라. 교통봉사단체의 지도 및 감독사항 규정(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15. 8. 24. ~ 9. 14.)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광진구 모범운전자 지회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진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 지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를 말한다.
3.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 지회”와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모범운전자 지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 혼잡 지역 교통지도
  2.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계도 등
- ②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로 주변 교통 안전 지도
2.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교통질서 계도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2.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회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5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교통봉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원인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광진구모범운전자 지회와 광진구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사업비용 보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광진구모범운전자 지회, 광진구녹색어머니연합회 사업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

#### 4.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9급 김삼주

교통행정과장 장 용 훈